

관리번호	규정-기획-2022-001_REV.2
제정일자	2022.04.18
수정일자	2023.05.18

# 행 동 강 령



**대 승**  
DAESEUNG.Co.,Ltd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 칭]

본 규칙은 주식회사 대승(이하"회사"라 한다)의 윤리 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 2 조 [목 적]

이 강령은 회사의 윤리경영정책을 임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위의 판단 기준과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정착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원(직원)이라 함은 취업규칙에 의해 채용된 사원(직원)을 말한다.
2.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라 함은 임직원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내 및 외부(고객사, 협력사, 공직자 등)의 모든 관계자를 말한다.

### 제 4 조 [적용 범위]

이 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근로계약에 따른 파견근로자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 5 조 [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 6 조 [위반사항 신고 및 제보자 보호]

모든 임직원은 본 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내부 고발제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보자의 신변 및 이로 인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제 2 장 투명 경영

### 제 7 조 [건전한 기업 윤리의 실천]

1. 임직원은 대승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임직원은 항상 대승의 윤리 경영을 준수해야 하며 대승인으로서 고객 및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전문성, 윤리성, 성실성을 실천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사적으로 회사의 제품이나 샘플, 상품, 비용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해서는 안된다.

4.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벌, 혈연,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 여부, 성적 취향, 국적, 인종 등에 있어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5.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품 수수, 금전 대차, 부정 지시, 부당 알선, 청탁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회사는 휴식 및 여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7.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강압, 학대 등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8.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최저 연령(15세)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 근로시간, 안전과 보건, 교육의 기회 등에서 법에서 정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8조 [법규의 준수]**

1. 임직원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지역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및 관습을 존중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2. 해외법인 근무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와 관습은 물론,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대승인으로서의 예의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

#### **제 9조 [수출 제한 준수]**

1. 회사는 수출 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사는 수출 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는 거래해서는 안된다.
3. 변경된 규정에 대해서는 외교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 3 장 공정한 직무 수행**

#### **제 10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러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부 신고제도에 따라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회사의 별도 지시를 받을 수 있다.

#### **제 11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승격, 이동, 보직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하게 해서는 안된다.
2.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격, 이동, 보직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 제 12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학연, 혈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 제 13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업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 제 4 장 상생 협력

### 제 14조 [평등한 기회 보장]

1.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사에게 신규 협력 업체의 등록, 참여 방법 등 거래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2. 협력사 평가 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 15조 [공정한 거래]

1. 회사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 시(관계사 포함) 법률 및 공정한 거래원칙을 준수한다.
2. 회사는 모든 사업활동에서 자유 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반 경쟁적 사업 거래 또는 관행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다른 회사에 대한 판매 가격이나 할당량 부과 또는 고객 할당과 같은 경쟁 제한과 관련하여 경쟁자와 언급 또는 협의를 하지 않는다. 나아가 임직원은 불공정한, 기만적인, 부정직한 사업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경쟁사와도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경쟁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제 16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 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당하지 못한 ①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경쟁사업자 배제, ④부당한 고객유인, ⑤거래강제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수량을 현저히 제한 하는 행위
  - ② 차별적 취급 : 부당하게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을 현저하게 유리 하거나 불리하게 거래하는 행위
  - ③ 경쟁사업자 배제 :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다른 경쟁자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행위
  - ④ 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⑤ 거래강제 :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 하여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 제 17조 [부적절한 수취금지]

1. 고객 및 협력사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우월한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수취를 하지 않는다.
2. 고객 및 협력사의 이해관계자와 불법사행행위(고스톱, 포커, 내기 골프 등)을 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협력사 또는 고객과의 모임(골프, 테니스 등)에 소요된 비용을 협력사 또는 고객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 제 18조 [상호 발전 추구]

협력사의 경쟁력은 곧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므로, 임직원은 협력사가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

### 제 19조 [협력사에 대한 존중과 예의]

1. 협력사 임직원과 직무 수행 시 협력사 임직원에게 불편함 또는 불만족 사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서비스 정신을 갖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협력사 임직원과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에 내방하였을 때는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 약속을 지킬 수 없거나 장시간 기다리게 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

## 제 5 장 사회적 책임

### 제 20조 [사회발전에 기여]

1. 회사는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기업시민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회사는 학벌, 혈연,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기회를 부여한다.

### 제 21조 [사회공헌활동의 전개]

1. 회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사회봉사 활동 및 재난구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한다.

### 제 22조 [환경의 보호]

1. 회사는 친환경제품 개발과 환경개선 투자를 통해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의 환경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재료나 원료의 사용을 최소화 하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4. 회사는 환경보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내부 임직원에게도 환경문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 23조 [책임있는 자재 구매]

1. 회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2. 회사는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등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 6 장 정보 보호

### 제 24조 [회사 및 고객의 정보 보호]

1. 임직원은 회사 정보를 왜곡, 날조하거나 무단 훼손해서는 안되며,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해서는 안된다.
2. 회사의 경영정보, 기술정보 등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회사의 승인 절차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3. 고객의 정보는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4. 회사는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따라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며, 정당하게 입수한 정보라도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다.

### 제 25조 [회사 자산을 이용한 사익 취득 금지]

1. 임직원은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정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임직원은 퇴직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지식재산권, 정보, 기술 등을 타인에게 제공 및 이용하지 않는다.
4. 회사의 허락 없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리목적의 부업활동이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 제 7 장 위조부품 방지

### 제 26조 [위조부품 방지]

1. 회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된다.
2. 회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3. 회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부칙

1. 본 행동강령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